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설치·운영·인력 기준
2. 전문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작 성 자	이름	정의서
	담당부서 (과)	청년정책팀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상희		연락처	044-202-3702
	과장	이화영		이메일	jes6773@mail.g o.kr

2025. 12. 01.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설치·운영·인력 기준															
	2.규제조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별표 2															
	3.위임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12.10~2026.01.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정책지원, 전담조직 평가관리, 전담인력 교육, 전문기관 인증 등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센터 지정, 운영 및 관련 기준 마련 필요															
	7.규제내용	○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인력 기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td><td>—</td></tr><tr><td>관련기관</td><td>「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전담조직</td><td>전국 17개소</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	이해관계자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	관련기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전담조직	전국 17개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														
이해관계자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															
관련기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전담조직	전국 17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위기아동·청년 지원정책의 데이터 추적, 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 ○ 전담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 ○ 위기아동·청년 지원 인증제 운영을 통한 민간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인력 배치 부담, 운영기준 준수에 따른 관리비용	정책 품질 및 집행의 일관성 확보, 전담인력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품질 개선, 대상자 지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초기비용이 존재하나, 사후 사회적 비용 감소로 중장기 순편익으로 전환												

		주요내용		정책센터 설치·운영·인력 기준 충족 의무 규제는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순응 유인·집행 현실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타당한 신설 규제이며, 제도의 도입 취지를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필수 최소 규제 수준으로 적정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위기가동청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1, 별표2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① 정책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설치 및 운영 기준 : 별표 1 나. 인력 기준 : 별표 2 2.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 것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책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정책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해당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지정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센터로 지정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1]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12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세미나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를 설치 및 구비하여야 한다. 2. 운영기준 가.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장은 전담조직 업무의 총괄·조정, 지역 내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며,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담조직과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장은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결산 및 조직운

현 행	개 정 안
	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2)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장, 팀장 및 팀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3)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별표 2]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인력기준(제12조 관련) 1. 직제기준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장을 두고, 정책연구·조직평가, 교육·홍보, 인증운영 등을 담당하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장: 1명을 둔다. 다만,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하여

현 행	개 정 안
	야 한다. 2) 팀장 및 팀원: 각 팀의 실무관리를 총괄하는 팀장 1명을 둘 수 있다. 팀원은 10명 내외로 둘 수 있다. 나. 자격기준 1)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년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나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라)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팀장: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년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위기아동·청년 정책연구 및 제도 표준화, 전국 전담조직의 체계적 성과관리, 전담인력 양성 및 안정적 교육체계 마련,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등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센터 설치·운영 및 인력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위법령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책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하위법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규제 집행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정부 개입 필요성

- 본 조항은 정책센터의 물리적, 인적 필요요건을 규정하며, 이는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 기준에 해당
- 민간 자율 운영만으로는 국가의 책임있는 개입이 불가능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설치·운영·인력 기준
	내용	별표 1(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및 별표 2(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인력기준)에 따른 최소 요건 충족 시 정책센터로 지정 가능
규제대안2	대안명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설치·운영·인력 기준 완화
	내용	별표 1 필수공간 최소화, 별표 2 인력 검직 허용 확대 및 경력 요건 단축
규제대안3	대안명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 미도입

	내용	최소 요건 규정 없이 자율적 운영
--	----	--------------------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높은 예측 가능성, 정책센터 인력의 전문성 담보, 정책센터 지정 후 추가 실적 입증 부담 없음	사무공간, 인력 기준 충족을 위한 초기 이행비용 발생
규제대안2	규제 이행 비용 감소, 기관 참여 확대 가능	경력, 자격기준 완화 시 정책 연구 및 성과평가 품질 저하 우려, 인증제 운영의 공적 신뢰 확보 한계
규제대안3	행정부담 및 비용 발생 없음	하위법령 위임 취지 미실현으로 집행 근거의 불명확성, 성과 측정 불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입법예고 의견수렴 이후 작성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규제대안1 선택) 규제 이행에 따른 초기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확보, 집행의 명확성, 정책 품질 고도화, 인증제의 신뢰 기반 확보 측면에서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며 상위 법령의 위임 취지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최적 대안으로 판단됨

3. 규제목표

- 정책센터의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 충족 의무를 통해 국가 책임 기반의 안정적 정책 플랫폼 기능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정책센터의 설치·운영·인력기준은 법률상 부여된 공공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해당하며, 센터장 겸임 허용과 반기 단위 회의 운영 등 행정 효율적 설계로 추가 부담 발생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있음
- 규제준수에 따른 비용은 사무공간 확보, 안전장비 및 필요서류 구비, 소속 인력(센터장, 팀장)의 자격기준을 고려하더라도 경미한 수준
- 제도 이행으로 발생하는 정책 품질 균형, 전담인력 전문성 제고, 인증제 신뢰 기반 확보의 편익이 비용을 상회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중앙치매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법적 근거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1, 별표2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의2, 별표7의2, 별표7의3,
설치기준	- 사무실, 회의실, 교육·세미나실 마련 필요 -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 설치 및 구비 필요	- 사무실, 회의실, 교육·세미나실 마련 필요 - 위탁받은 기관 내 설치 원칙	- 사무실 : 자립지원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 구비 필요 -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 자료실 또는 대기실 :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
운영기준	- 전담조직과 반기별 회의 개최 - 기록 및 서류 구비 의무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인사에 관한 기록, 재산 목록 등)	- 광역치매센터와 반기별 회의 개최 - 기록 및 서류 구비 의무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인사에 관한 기록, 재산 목록 등)	- 관리규정 제정, 시행의무 - 장부 등의 비치 (연혁, 재산목록, 운영일지, 인사카드,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금전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대상자 사례관리 관련 서류)
인력기준	- 센터장 : 1명, 겸직가능,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및 7년 이상 경력 - 팀장 : 1명,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및 5년 이상 경력 - 팀원 : 10명 내외	- 센터장 : 1명, 겸직가능,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및 7년 이상 경력 - 부센터장 : 1명, 상근,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및 5년 이상의 경력 - 팀장 : 1,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및 5년 이상의 경력 - 팀원 : 15명 내외	- 센터장 : 1명 - 전담인력 : 1명 이상 - 사무원 : 1명 이상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설치·운영·인력 기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설치·운영·인력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설치·운영기준)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사무실, 회의실, 교육·세미나실을 마련해야 하고, 소방·안전 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 이는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준수 필요하며, 초기 준비기간 내 시설 확보가 가능함
- (인력 기준)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자격 요건을 갖춘 센터장, 팀장 및 10명 내외의 팀 구성이 필요함
 - 본 기준은 규제의 목적 달성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기준으로서 대체 인력 확보 가능성이 존재하며, 초기 준비기간 내 조직정비가 가능함
- (규제에 대한 순응 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정책센터에 운영경비 및 예산보조를 할 수 있으므로 피규제자가 규제를 준수하고 정책센터 지정을 신청할 유인구조 형성
 - 일부 기관에서 사무공간 확보와 인력 자격 기준 준비에 대한 부담을 우려할 수 있으나, 안전장비 기준을 기존 타 시설와 유사 수준에서 요구(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기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청소년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하고 있고, 센터장 겸직 허용 및 팀 구성을 10명 내외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부담이 과도해질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억제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위기아동청년법」 제25조에 정책센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센터를 지정·운영할 예정으로 행정적 집행 가능성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위기아동청년법」 제25조제4항에 정책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정적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5.3월 제정, '26.3월 시행)

2. 향후 평가계획

-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운영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 향후 1년 내에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정비 검토 추진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1, 별표2	향후 1년 내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정비 검토 추진	향후 1년 내

4. 종합결론

- 정책센터 설치·운영·인력 기준 충족 의무 규제는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순응 유인·집행 현실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타당한 신설 규제이며, 제도의 도입 취지를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필수 최소 규제 수준으로 적정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설치·운영·인력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정책센터 설치·운영·인력 기준 충족 의무 규제는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순응 유인·집행 현실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타당한 신설 규제이며, 제도의 도입 취지를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필수 최소 규제 수준으로 적정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설치·운영·인력 기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활동제 목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설치·운영, 인력 기준 준수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일부 직접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만 적용되는 선택적 규제이자, 센터장 겸직 등 부담 완화 장치가 존재하여 편익 대비 비용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구분	주요 내용	비용 완화 요소
	인력기준 충족 비용	센터장, 팀장 자격기준 충족 및 인력 배치	- 센터장 겸직 가능 - 정책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보조 가능
	시설기준 충족 비용	- 사무실, 회의실, 교육·세미나 공간 구비 - 안전장비 구비	- 대부분의 기업, 소상공인은 이미 사무공간을 보유하거나, 겸직기관 형태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음 - 정책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보조 가능 - 안전장비 구비 관련 비용 규모는 현장 안전장비의 통상적 구비 수준으로 경미
	행정부담	지정신청서 제출	기관지정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만 적용되는 선택적 규제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활동제 목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설치·운영, 인력 기준 준수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기업, 소상공인이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설치·운영, 인력 기준을 준수하여 정책센터로 지정될 경우, 재정 보조, 정책 사무의 공식 수행 기관으로 지정, 사업 수요 확보 등 직접 재무, 운영상의 편익이 발생	
	구분	주요내용
	사업 안정성 확보	- 공공 사무 수행의 법적 지위 확보 -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로 지정되면 최소 3년간 운영, 평가를 통해 3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해 사업 안정성 확보
	재정 보조 근거 확보	- 예산 범위 내 정책센터 운영경비 보조 가능
	사업 수요 확보	- 정책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인 성과평가, 교육, 인증 서비스를 전국 전담조직, 전담인력, 민간 기관 등이 이용
	공적 국가기관으로 인정	- 기관의 브랜드 신뢰도 상승 편익 발생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설치·운영, 인력 기준 준수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설치·운영, 인력기준을 준수한 검증된 기관이 안정적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반 마련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 신뢰성 있는 정책 및 제도 체감	
	구분	편익
	정책 품질 향상	인력 양성 및 교육을 통한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원스톱창구 운영을 통한 국민의 정보 접근 비용 및 탐색비용 절감
	대상자 안정적 지원	전국 전담조직 성과관리를 통한 지원 편차 감소
	지원 확대	인증제 운영을 통한 민간 서비스 지원 확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문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2.규제조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3.위임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12.10~2026.01.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위기아동·청년법 제27조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연장 기간 및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함								
	7.규제내용	○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인증서, 기타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전문기관의 장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전문기관의 장</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전문기관의 장	-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전문기관의 장	-								
9.규제목표	유효기간 종료 전 선제 심사와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등 전문기관의 직접 비용은 경미하며, - 행정적 재정적 지원 지속으로 인한 전문기관의 직접편익, 질 높은 지원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라는 일반 국민의 편익이 비용을 상회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여부기준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미해당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전문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급 받은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6개월 이내에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당 전문기관의 연장 여부 및 그 연장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위기 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3년을 정하고 있고, 연장 기간 및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만료 6개월 전 까지 연장신청서, 기존 인증서, 기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함
- (선택 근거) 기존 인증서와 증빙 기준 준용으로 이행 부담을 낮추면서 인증 연장을 통한 서비스 공백을 방지할 수 있어 편익이 더 큼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입법예고 결과에 따라 작성 예정			

3. 규제목표

-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여 전문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대상자에게 질 높은 지원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의 목적은 인증 전문기관의 서비스 연속성 보장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있음
- 본 규정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점을 사전에 공표하여 전문기관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제출 필요 서류를 필수 최소자료로 한정하며, 심사기간을 행정처리를 위한 통상 운영 가능범위인 6개월로 설정하여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한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 타법사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가족친화법 시행규칙 제1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63조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문인력 내부 인력과 조직을 기반으로 중방 서류, 기존 인증서, 연장신청서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고도의 기술요건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을 요구하지 않아 현실적 이행이 가능함
- 유효기간이 연장된 전문기관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규제의 순응도도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위기아동청년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정책센터에서 인력 확보를 통해 인증제 운영 업무를 담당하므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위기아동청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책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 확보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5.3 제정, '26.3 시행)

2. 향후 평가계획

- 인증제 운영에 따라 보완 필요 사항 발생 시 보완 예정

3.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직접 이행 부담이 수용가능 수준이고, 인증의 연속성, 공공정책 신뢰 강화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여 도입이 타당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전문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전문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장
활동제목	전문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장 신청서, 기존 인증서, 자체평가 보고서, 경영계획 및 실적, 전문 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실적, 프로그램 수립 및 실시 결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 담당 인력이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고 정리하는 인건비성 비용과 필요시 외부자문 등을 활용하는 소규모 용역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인증신청서, 기존 인증서 외 제출 필요 서류들은 역량 있는 전문기관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필요요건이며, – 연간 사업 운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가능하고, 유효기간 내에 내부관리 목적으로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업무 범위에도 해당함 ○ 또한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에서 전문기관의 재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 예정으로 별도의 용역 비용은 불요 ○ 연장 신청은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관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선택적 규제이므로,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의 직접 비용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장
활동제목	전문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규정은 인증제의 유지 가능 기간과 심사 결과 지체 없는 통보 구조를 명확히 하여, 참여 기관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함 ○ 심사를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선제 시행함에 따라, 전문기관의 사업 신뢰를 보호함 ○ 위기아동청년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기관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 인증 연장 기관에게는 운영상 편익이 직접적으로 발생
------	---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전문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역량 기준을 지속 충족하는 기관만 인증을 유지하게 되므로 일반 국민은 품질 높은 지원 서비스를 공백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직접 편익을 얻음 ○ 심사 과정에서 역량 미달 기관이 선제적으로 차단되므로, 국민 신뢰성 확보 가능